

【노인인권보호지침 및 노인학대 예방정보 안내문】

노인인권이란 ?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시설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을 말함)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 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시설 입소 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 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시설은 입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 외부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시설 내, 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 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시설 입소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타수급자,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입소 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10)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1)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학대 유형 및 대응 방법

노인학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1) 노인학대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 및 폭력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및 폭력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 방임 포함)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거나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하지 않는 행위

2) 입소 노인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 절차

 <p>신고 1577-1389 또는 129</p>	 <p>접수 학대상황 파악</p>
 <p>현장 방문 상황, 정보수집</p>	 <p>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p>
 <p>서비스 제공 상담, 법률, 의료, 쉼터 입소 등</p>	 <p>평가 및 종결 학대 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p>
 <p>사후관리 지속적 관심으로 재학대 방지</p>	

3)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관한 정보

노인학대 신고 · 상담 전화
129 또는 1577-1389

-여러분의 관심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